

신용지원부 종합감사 결과보고

○ 감사목적

- 신용지원부의 주요업무에 대한 점검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현안 문제점의 조기과약 및 개선방안 마련
-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각종 계약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경영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점검

○ 감사기간 : 2014. 4. 23(수) ~ 4. 29(화) (5일간)

○ 감사 중점사항

- 업무분장, 예산운영 등 전반적 부서운영 실태 점검
- 방만경영 예방 및 경영지침 준수 및 임직원 행동강령 준수 실태
- 보증채무이행업무 및 계약 관련 업무 적정성
- 부실채권 관리 및 신용회복지원 업무의 적정성 등

○ 감사 처분 현황

연번	제목	종류	조치사항
1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부적정	주의	2009. 9. 27. 부터 2011. 5. 2. 까지 채권을 잘못 관리하여 채권의 시효가 완성되는 것과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채권의 소멸시효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람

연번	제목	종류	조치사항
2	부실채권 상각 업무 및 소멸시효 완성 절차 미준수	통보	앞으로 「학자금대출채권 관리규정」 제30조(시효관리) 및 제67조(부실채권의 상각대상 및 시기 등)의 규정에 따라 부실채권에 대하여 이사회회의 의결절차를 거쳐 상각처리한 채권에 대해서만 소멸시효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3	소송위임변호사 선임 절차 미준수	주의	앞으로 변호사 선임 시 「소송위임변호사 활용세칙」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임하는 등 변호사 선정·운영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시기 바람
4	최소부담채무액 범위 개선 필요	통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최소 부담채무액인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까지의 지연배상금’을 채무조정 대상채무로 전환하고 채무자로부터 채무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의 경제여건, 상환능력 등을 고려하여 회수하거나 감면해 줄 수 있도록 유관 부서와 협의하고 「채무조정 운영세칙」 등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5	손해금(지연배상금) 감면제도 안내 부적정	통보	손해금(지연배상금) 감면 등 채무조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재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되고 있는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제도 e러닝’의 내용이 「학자금대출 관리규정」 및 「채무조정 운영세칙」 과 상충되지 않도록 수정·보완하시기 바람

연번	제목	종류	조치사항
6	신용도판단정보 관리 불철저	주의	앞으로 신용도판단정보의 등록·해제 업무의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신용도판단정보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람
7	개인정보 보호 소홀	현지 조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문서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규정」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람
8	법인카드 사용 기준 미준수	현지 조치	법인카드 사용자가 매출전표에 실명을 서명하게 하는 등 「법인카드 사용기준」에 따라 법인카드가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람